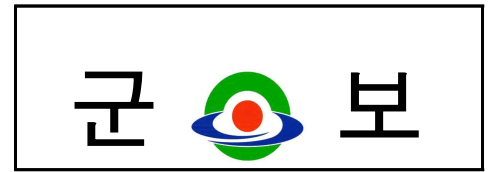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5호 2023. 10. 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35호)

공 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26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 허가
하 천 명	내성천(국가하천)
점 용 자	예천군수(건설교통과)
주 소	
위 치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일원
점용면적 (채취량)	10,000㎡ (1,000㎥)
점용목적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사업개요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점용기간	2023년 10월 04일 ~ 2023년 12월 31일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예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2. 개정이유

성과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신청 요건, 심사 기준 등을 정비하여 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변경(안 별표)

- 1) 공모사업 분야, 신규 현안사업 분야의 인센티브 신청 요건, 심사기준, 포상금액 등 변경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sonhw1124@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50-60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등급	평가단위	인센티브	
		포상금 (부서)	특별휴가 (유공자)
최우수 (1위)	• 중앙 단위 평가	200만원	2일
	• 광역 단위 평가	150만원	
	• 민간기관 평가(중앙 및 도 단위)	100만원	
우수 (2위)	• 중앙 단위 평가	150만원	
	• 광역 단위 평가	100만원	
	• 민간기관 평가(중앙 및 도 단위)	70만원	
장려 (3위 이하)	• 중앙 단위 평가	100만원	
	• 광역 단위 평가	70만원	
	• 민간기관 평가(중앙 및 도 단위)	50만원	

※ 순위 결정(등급)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기관표창)된 경우 평가단위 별로 우수 등급을 적용

※ 다음의 경우 수상등급의 1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절대평가 등에 따라 다수 기관이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 시상(표창장, 표창패 등)이 없는 단순 평가인 경우

※ 참가비나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는 지급 제외

※ 부서가 공동 추진(협업)하여 수상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타부서와 협업한 경우
: 추진부서(70%), 협업부서(30%)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부서와 협업한 경우
: 추진부서(30%), 협업부서(70%) 지급

2. 투자유치 분야

평가단위(투자유치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20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 투자유치액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상의 총투자금액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상의 총분양금액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분양(또는 매매) 금액 + 건축비

※ 투자유치일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공문 제출일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작성일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일

※ 투자유치 담당 직원의 경우 50%를 감하여 포상금을 지급(부서 미지급)

3-가. 공모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군비 0%	군비 50% 이하	군비 50% 초과
14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80억원 이상 ~ 14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3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0억원 미만	25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심사를 거쳐 확보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

※ 최초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내시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자치단체 간 경쟁을 수반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 불가)

※ 국·도비 공모사업 중 지침에 의한 사업신청 등 공무원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각종 민간 및 민간사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사업 제외

3-나. 신규 현안 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군비 0%	군비 50% 이하	군비 50% 초과
15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30억원 이상 ~ 60억 미만	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신규 국도비 사업이면서 1차년도 사업 추진 후 신청 가능

(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 가능)

4. 예산절감 분야

평가단위(예산절감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0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5. 세입증대 분야

평가단위(세입증대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6. 시책개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	유공자
시책(자체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75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7.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 중앙 또는 광역 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룬 경우
- 집단·고질민원, 숙원사업 등을 해결한 경우 등

평가단위	포상금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부서(팀)의 일상적인 업무,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종결되지 않은 사업은 심사 제외

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업무 종합평가(부서평가)	부서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부서업무 종합평가(담당자 인센티브)	유공자	인용 시 1인당 최대 50만원		
읍면행정 종합평가(읍면평가)	읍면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	부서 읍면	1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계획을 따름 ※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인용 시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